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8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2. 18

(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(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별정직 임용분야를 최소화함

다. 주요내용

- 별정직 임용대상중 「문화재 관리용원」 폐지(안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구조 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별정직 임용분야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요원을 별정직 임용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.
- 그러나, 우리군은 어느지역보다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발굴·보존 전승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해 볼때,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살려나갈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요원은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임용·활용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,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
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|--|
| 의안 | |
| 번호 | |

제출년월일 : 2000. 8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, 별정직 임용분야를 최소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 및 공직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

2. 주요골자

- 별정직 임용대상 중 「문화재관리요원」 폐지 (안 제2조)

3. 관련근거

- 전남 자치 12200-1043(2000. 5. 22)호 “2000년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”

2000년도 지방별정직 정원 감축

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
치단체간의 정원감축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1.
2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하는
등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임

행 정 자 치 부

□ 규칙개정시 별정직 정원의 정비도 병행

-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정원 책정은 최대한 억제
 -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에 한해 극히 예외적 인정
- 불합리한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정원의 정비
 - 일반직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『일반직정원』으로, 별정직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『별정직 정원』으로 조정
- ※ 일반직과 별정직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별정직이 임용될 수 있는 분야의 최소화(우수인력의 확보와 공직의 경쟁력 강화)

□ 연도별·분야별 감축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

- 2단계 구조조정의 3개년('99~2001) 계획은 '99년 협의 확정된 계획대로 집행
 - 조례상에 확정공포된 연차별 감축인원의 조정은 불가
 - 다만, 2001년도 감축분을 금년도로 앞당겨 감축하는 조례 개정은 가능. 이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후 개정
- 분야별 감축인원은 '99년에 확정된 계획대로 추진하되 '99 민간위탁추진 미진 사항은 조속 집행
 -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불가피한 사유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인력만큼 다른 분야에서 감축, 총 감축인원 불변
 - '99년에 확정된 민간위탁 등 3개 기능분야별 감축 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시,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후 조정